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원시자료 공개 알림

2017. 01. 26.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I

지역사회건강조사 소개

□ 조사 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 (2008년부터 전국조사 실시)

※ 시행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

□ 조사 개요

○ 모 집 단 : 시·군·구 보건소별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대상 : 시·군·구 보건소별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규모 : 시·군·구 보건소별 평균 900명, 총 227,721명 목표

○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표본설계

모집단정의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정의

분석 및 층화 동/읍·면, 주택유형별 층화

표본
배분

표본크기 결정 보건소별 평균 900명, 목표오차 $\pm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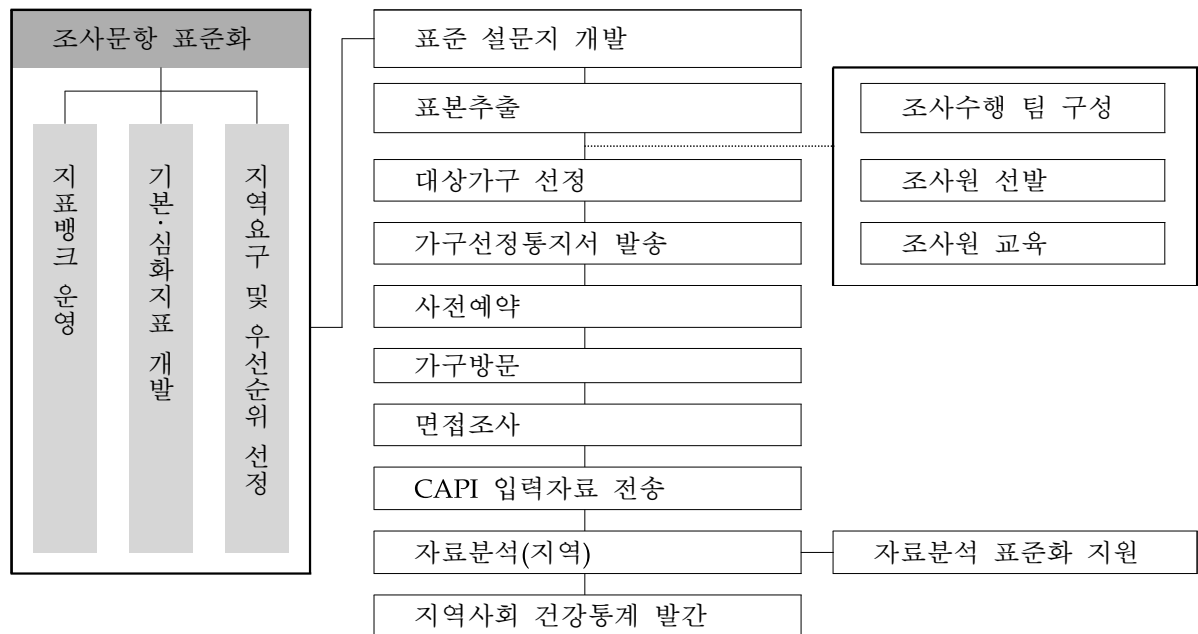
동/읍면 할당 동/읍·면 최소 1개 이상 표본지점 할당

표본
추출

표본지점 추출 1차 추출, 통·반/리 확률비례계통추출

표본가구 추출 2차 추출, 계통추출

○ 조사수행



○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
가구조사	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가구 월간소득 등
건강행태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이환	주요 질환별 의사진단 여부 등
의료이용	의료서비스 미수진 경험 및 이유
사고 및 중독	사고중독 경험 및 건수, 낙상 경험 및 치료 여부 등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주관적 건강수준, 삶의 질 지수(EQ-5D) 등
보건기관 이용	보건기관 이용 여부
사회물리적 환경	사회 물리적 환경, 사회적 연결망 등
개인위생	손 씻기 감염병 예방인지 등
여성건강	현재 가임기 여부
교육 및 경제활동	직업, 학력, 혼인상태

Ⅱ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원시자료 공개

□ 추진 경위

-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매년 254개 보건소에서 약 23만건의 자료를 수집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원자료의 논리적 오류 및 이상치 등을 제거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
 - ※ 2012.01.04.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년, 2009년 원시자료 공개
 - 2012.12.14.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년 원시자료 공개
 - 2014.01.03. 지역사회건강조사 2011년, 2012년 원시자료 공개
 - 2015.01.16. 지역사회건강조사 2013년 원시자료 공개
 - 2016.01.29.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원시자료 공개

□ 용어 정의

- 원자료 : 조사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로서 논리적 오류 및 이상치 등을 처리하기 이전 단계의 최초자료
- 분석용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 발간을 위해 조사종료 후 원자료의 입력오류와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기관(17개 시도, 254개 보건소, 35개 책임대학교)에 제공되는 자료
- 원시자료 : 원자료에서 논리적 오류 및 이상치를 제거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자료로서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
 - ※ 응답자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보호법」(2011.9.30 시행))

□ 공개 대상 및 일시

- 공개 대상 : 제한 없음
- 공개 일시 : 2017. 1. 26.(목)

□ 공개 자료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원시자료

- 전국 및 광역 시도로 구분하여 DB 제공
- SAS 및 텍스트 형태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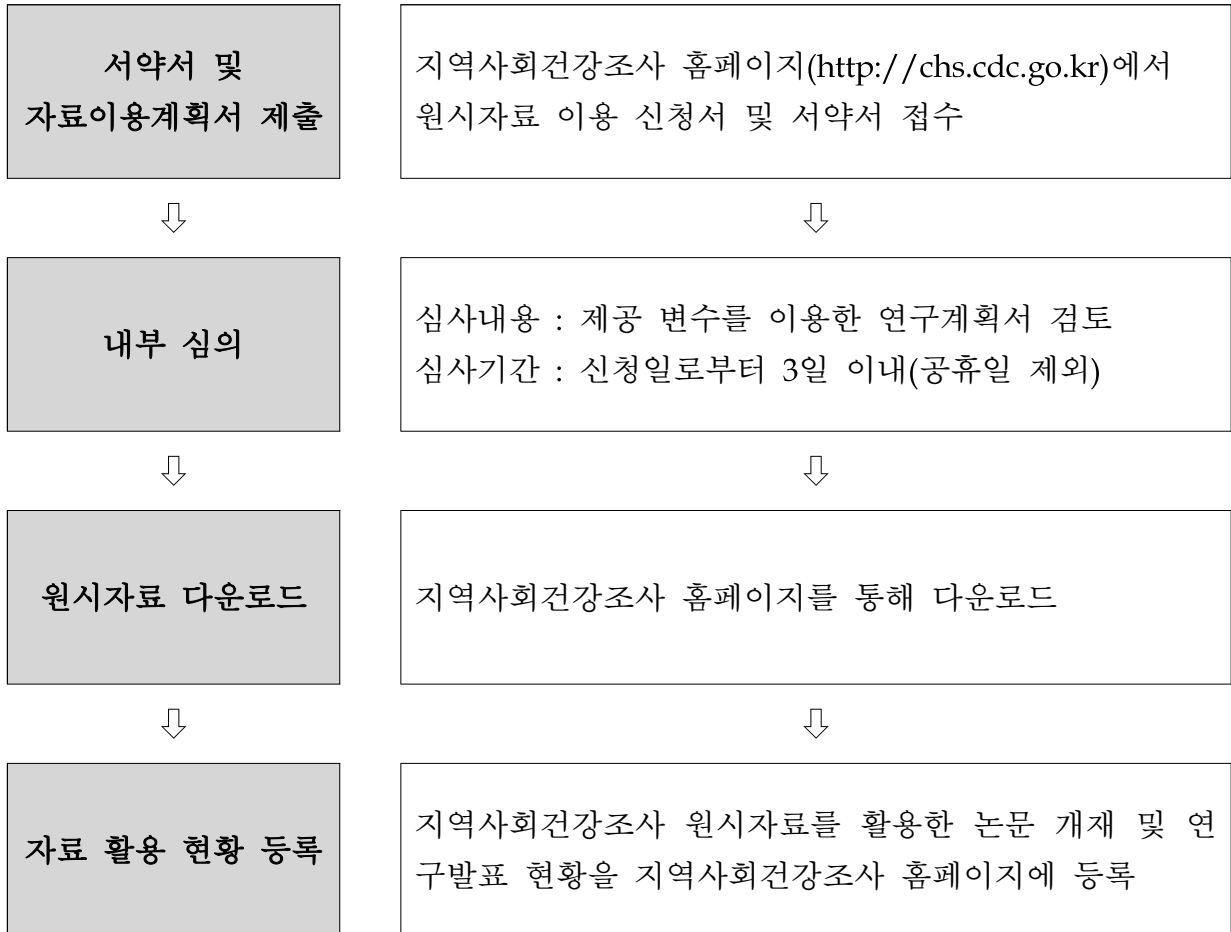
지 역	2015년		
	DB명	자료수	변수개수
전국	chs15_all	228,558	219
서울특별시	chs15_A	23,004	219
부산광역시	chs15_B	14,604	219
대구광역시	chs15_C	7,329	219
인천광역시	chs15_D	9,014	219
광주광역시	chs15_E	4,600	219
대전광역시	chs15_F	4,590	219
울산광역시	chs15_G	4,567	219
세종특별자치시	chs15_Q	924	219
경기도	chs15_H	41,181	219
강원도	chs15_I	15,885	219
충청북도	chs15_J	11,612	219
충청남도	chs15_K	13,587	219
전라북도	chs15_L	12,527	219
전라남도	chs15_M	19,736	219
경상북도	chs15_N	22,271	219
경상남도	chs15_O	18,037	219
제주특별자치도	chs15_P	5,090	219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 PDF 파일로 제공
- 주요 수록 내용
 - 조사개요 및 자료구조, 자료정제, 자료구성에 관한 설명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특성 및 복합표본설계 분석시 유의사항
 - 지표 정의 및 변수생성 프로그램
 - 조사문항에 따른 해당 변수, 변수라벨, 코드 및 코드명
 -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조사표(가구조사 및 개인조사)

□ 원시자료 이용 및 신청 절차

-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자는 원시자료 이용 가능
- 이용 및 신청절차



<붙임>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2.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4호
개정 2012. 1. 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4호
개정 2012. 9.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5호
개정 2016. 1.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원자료”라 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입력오류 및 논리적 오류 등이 걸러지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한다.
- ② “원시자료”라 함은 원자료에서 자료 정제 및 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 ③ “산출물”라 함은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정기·비정기 인쇄물에 게재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 ④ “연구자”라 함은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보건·의료분야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자료의 제공

제3조(자료제공범위) 공개 자료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원시자료에 한한다.

1. 법정전염병 발생보고자료(2001~)
2. 말라리아 역학조사(2011~현재)
3.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역학조사(2010~현재)
4.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 제2기(2001), 제3기(2005)
5.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현재)
6.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5~)
7. 퇴원손상심층조사(2005~)
8. 소아·청소년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조사(2005)
9. 지역사회건강조사(2008~)

10. 급성심장정지조사(2006~현재)

제4조(자료제공대상)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분야 등의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원시자료의 공개청구

제5조(원시자료 공개청구) 원시자료 공개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시자료 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전자창구 또는 우편으로 “원시자료 이용 연구계획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1호 : 법정전염병 발생보고자료(감염병감시과로 우편접수)

나. 제3조제2호 내지 3호 : 역학조사 자료(감염병관리과로 우편접수)

다. 제3조제4호 내지 8호 : 국민건강영양조사(<http://knhanes.cdc.go.kr>)

라. 제3조제9호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http://yhs.cdc.go.kr>)

마. 제3조제10호 : 퇴원손상심층조사(<http://injury.cdc.go.kr>)

바. 제3조제11호 : 소아·청소년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조사(건강영양조사과로 팩스 접수)

사. 제3조제12호 : 지역사회건강조사(<http://chs.cdc.go.kr>)

아. 제3조제13호 : 급성심장정지조사(<http://cvd.cdc.go.kr>)

※ '12년 12월 공개 예정

2. 원시자료 제공 여부는 각 해당 부서의 원시자료 이용 연구계획서 심의를 거쳐서 적합한 경우 공개를 결정한다.

3. 원시자료 제공이 결정된 경우, 자료 요청자는 각 사이트의 「이용자 DB」에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원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원시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자료가 담긴 CD를 우편으로 제공받되, CD로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한다.

5. 이미 사용을 승인받은 자라도 동일한 원시자료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정한 절차를 재차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원시자료 공개여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연구자는 그 공개 거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원시자료의 활용

제7조(원시자료 분석) 원시자료 이용자는 원시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자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분석함으로써 원시자료의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8조(논문 및 발표) 논문작성 및 연구결과 발표 등, 제공받은 원시자료의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이트에 그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원시자료 표기)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논문 등에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다만 원시자료의 명백한 오류로 인한 문제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원시자료 및 산출물 이용제한) 연구자는 제공받은 원시자료에 대하여 제3자가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등을 할 수 없으며, 원시자료 및 산출물을 일체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원시자료 활용제한 통보 등) 제5조제5항 및 제1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서는 각 해당 부서가 즉시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산출물을 제출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학회 등에 그 결과에 사용된 원시자료가 사용 승인되지 않은 자료임을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